
위임 입법집

2007 No. 320

보건 및 안전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2007년 2월 7일 작성
2007년 2월 15일 의회 상정
2007년 4월 6일 발효



£5.50

위임 입법집

2007 No. 320

보건 및 안전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

2007년 2월 7일 작성

2007년 2월 15일 의회 상정

2007년 4월 6일 발효

목차

제1부 도입

1. 인용 및 개시
2. 해석
3. 적용

제2부 공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일반 관리 의무

4. 적격성
5. 협력
6. 조정
7. 일반적 예방 원칙
8. 클라이언트의 위촉
9. 프로젝트 관리 협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0. 정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1. 설계자의 의무
12.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설계
14. 하청업자의 의무

제3부 프로젝트 신고시 추가되는 의무

14. 프로젝트 신고시 클라이언트의 위촉

15. 프로젝트 신고시 정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6. 프로젝트 신고시 공사 단계의 시작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7. 보건 및 안전 파일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8. 설계자의 추가적 의무
19. 하청업자의 추가적 의무
20. CDM 조정자의 일반적 의무
21. CDM 조정자의 프로젝트 신고
22. 원 하청업자의 의무
23. 공사 단계 계획과 관련하여 원 하청업자의 의무
24. 작업자들과의 협력 및 협의와 관련하여 원 하청업자의 의무

제4부 공사 현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관련 의무

25. 규정 제26조~제44조의 적용
26. 안전한 작업 장소
27. 양호한 상태와 현장 안전
28. 구조물의 안정성
29. 철거 및 해체
30. 폭약
31. 굴착
32. 방죽과 잠함
33. 검사 보고서
34. 배전 설비
35. 익사 방지
36. 교통 통행로
37. 차량
38. 화재 등에 기인하는 위험 예방
39. 비상시 절차
40. 비상시 경로 및 비상구
41. 화재 탐지 및 소방
42. 신선한 공기
43. 온도 및 악천후 보호
44. 조명

제5부 일반

45. 민사책임
46. 화재 관련 법집행

47. 경과규정

48. 폐지 및 개정

부칙 1 - 행정부(혹은 영국철도규제국)에 신고해야 하는 상세내용

부칙 2 - 복지시설

부칙 3 - 검사보고서에 수록해야 하는 상세내용

부칙 4 - 협정서의 폐지

부칙 5 - 개정

국무장관은 작업장 보건안전법 1974(이하 “1974법”이라 함) 부칙 3의 제15조 (1)항, (2)항, (3)(a)항 및 (3)(b)항, 제5조 (a)항, (6)(a)항 및 (6)(b)항, (8)항 및 제(9)항, 제47조 (2)항 및 (3)항, 제80조 (1)항 및 (2)항, 제82조 (3)(a)항, 그리고 단락 1의 (1)항과 (2)항, 단락 6, 7, 8(1), 9~12, 14, 15(1), 16, 18, 20 및 21에 의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 규정을 제정한다.^(a)

이러한 제정 과정에서 국무장관은 1974법 제11조 (2)항 (d)호에 의거하여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신에게 제출한 제안서를 수정하지 않고 발효하여 동 법 제50조 (3)항에 따라 보건안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하며, 당해 기구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동 법(b) 제80조 (4)항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b)

제1부 도입

인용 및 개시

1. 본 규정은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2007이라 하며, 2007년 4월 6일 발효된다.

해석

2.

(1) 본 규정에서 문맥상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사업”이라 함은 (수익 유무에 상관없이) 거래, 영업 혹은 기타 사업을 말한다.

^(a) 1974 c.37; 제11절 (2)항, 제15절 (1)항 및 제50절 (3)항은 고용보장법 1975 c.71, 부칙 15, 단락 4, 6 및 제 16(3)항에 의거 각각 개정되었다.

^(b) 스코틀랜드와 관련해서는 스코틀랜드법 1998 제57조 (1)항 역시 참조(1998 c.46). 이 법에는 유럽공동체법에 의거하는 의무의 준수 및 이행과 관련된 기능이 스코틀랜드 각료들에게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과 관련된 각료의 기능이 유럽공동체법 1972(1972 c.68) 제2(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클라이언트”라 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을 이행하는 개인을 말한다.

(a) 자신을 위해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개인의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수락한다.

(b)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CDM 조정자”는 규정 제14(1)항에 의거 CDM 조정자로 지정된 개인을 말한다.

“공사 현장”에는 공사 작업을 이행하거나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모든 장소가 포함된다. 단, 공사 작업이 아닌 목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사 현장 내의 작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 단계”라 함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공사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단계 계획”이라 함은 공사 작업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협약, 현장 규칙 및 모든 특별 조치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공사 작업”이라 함은 모든 건물, 토목 공사 혹은 토목 공사 작업을 말하며 다음이 포함된다.

(a) 구조물의 공사, 개조, 전환, 배치, 시운전, 수선, 수리, 유지, 재개조 혹은 기타 유지보수(고압에서 물이나 연마재를 사용하거나 혹은 부식성/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세척을 포함), 해체(decommissioning), 철거 혹은 해체(dismantling)

(b) 현장 정리, 폭파, 조사(현장 조사는 제외) 및 굴착 등을 비롯하여 공사하고자 하는 구조물에 대한 준비작업,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사하게 되는 구조물이 사용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현장이나 구조물의 정리 혹은 준비작업

(c) 구조물 형성을 위한 조립용 구성품의 현장 조립이나 혹은 당해 조립 직전에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었던 조립용 구성품의 현장 해체

(d) 구조물이나 혹은 구조물의 철거나 해체로 발생한 산물이나 폐기물, 혹은 당해 해체 직전에 당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었던 조립용 구성품의 해체로 발생한 산물이나 폐기물의 제거

(e) 기계적, 전기적, 기체, 압축가스, 수역학적, 통신, 전산 혹은 기타 구조물 내에서 혹은 구조물에 일반적으로 고정되는 서비스의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수리 혹은 제거

단, 당해 조사나 채굴이 실시된 장소에서 채굴된 광석 자원이나 이행된 준비 활동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청업자”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작업을 이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본 규정에 명시된 클라이언트, 원 하청업자 혹은 기타 개인 포함).

“설계”에는 구조물과 관련된 도면, 상세 설계, 시방서 및 건축견적서(물품이나 자재 시방서 포함), 그리고 설계 목적을 위해 작성된 계산수치가 포함된다.

“설계자”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산물과 관련하

여 혹은 특정 구조물의 기계적 혹은 전기적 계통과 관련하여 다음을 이행하는 모든 개인을 말하며(본 규정에 명시된 클라이언트, 하청업자 혹은 기타 개인 포함), 이러한 개인은 자신의 통제 하에서 어떤 개인이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설계를 작성 혹은 변경

(b) 자신의 통제 하에서 어떤 개인을 배치하거나 지시

“굴착”에는 토목공사, 도랑, 계단통, 샤프트(shaft), 터널 혹은 지하 작업이 포함된다.

“행정부”라 함은 보건안전부를 말한다.

“일반적인 예방 원칙”이라 함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 관리 규정 1999의 부칙 1에 명시된 일반적인 예방 원칙을 말한다.^(a)

“안전 및 보건 파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규정 제20(2)(e)항에 명시된 기록

(b)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1994 제14(d)항에 의거하여 작성된 보건 및 안전 파일 포함^(b)

“적재 계획”이라 함은 적재 혹은 하역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작업 장소”라 함은 공사 작업 목적을 위해 혹은 공사 작업에 기인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 목적을 위한 작업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사전공사 정보”라 함은 규정 제10조에 명시된 정보를 말하며,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5조에 명시된 정보를 말한다.

“원 하청업자”라 함은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원 하청업자로 지정된 개인을 말한다.

“프로젝트”라 함은 공사 작업을 포함하거나 혹은 공사 작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며, 당해 공사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획, 설계, 관리 혹은 기타 작업이 포함된다.

“현장 규칙”이라 함은 규정 제22조 (1)항 (d)호에 명시된 규칙을 말한다.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a) 모든 건물, 목재/석조/금속/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철로 혹은 측선, 전차 궤도, 선창, 항구, 내륙 항해, 터널, 샤프트, 교량, 고가도로, 상수도, 저수지, 도관 혹은 도관로, 케이블, 송수로, 하수관, 하수처리장, 가스탱크, 도로, 이착륙장, 호안공사, 토목공사, 석호, 댐, 방벽, 잠함, 기둥, 타워, 철탑, 지하 탱크, 방토 혹은 천연의 지형을 보존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물, 식재용 식수 및 상기 언급한 것과 유사한 모든 구조물

^(a) S.I. 1999/3242, 이는 본 규정과 상관없는 개정안이다.

^(b) S.I. 1994/3140, S.I. 2006/557에 의거 개정됨. 이는 다른 개정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

- (b) 공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지지물이나 접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거푸집, 발판, 비계 혹은 기타 구조물
 그리고 구조물이라는 언급에는 구조물의 일부도 포함된다.
 “교통 통행로”라 함은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통행을 위한 경로를 말하며, 진입로, 출입구, 적재 구획 혹은 경사로가 포함된다.
 “차량”에는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작업용 장비가 포함된다.
 “작업 장비”라 함은 작업시 사용하기 위한 모든 기계, 기기, 기구, 공구 혹은 설비를 말한다(전용 여부에 상관없음).
 “작업장”이라 함은 공사 현장을 제외하고 작업장(보건, 안전 및 복지) 규정 1992^(a)의 규정 제2조 (1)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서면”에는 전자적 형식으로 보관되며 출력이 가능한 서면 문서가 포함된다.
- (2) 본 규정에서 계획, 규칙, 문서, 보고서 혹은 사본을 칭하는 모든 언급에는 다음의 형식으로 보관되는 계획, 규칙, 문서, 보고서 혹은 사본이 포함된다.
- (a) 필요시 출력 사본의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형식
 (b) 분실이나 무단 사용으로부터 안전한 형식
- (3)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공사 단계가 다음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프로젝트를 신고한다.
- (a) 30일
 (b) 500인의 작업자에 해당하는 근로일 수

적용

3.

- (1)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a) 영국 내의 지역
 (b)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에 관한 법 1974(영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적용) 명령 2001^(b) 제8조 (1)항에 의거 1974법의 제1절~제59절 및 제80절~제82절에 명시된 영국 이외의 지역
- (2) 본 규정의 다음 단락에 의거, 공사 작업 및 그와 관련하여 본 규정이 적용된다.
- (3) 제3부에 의거하는 의무는 프로젝트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a) 신고하는 경우
 (b) 클라이언트를 위해 혹은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혹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

^(a) S.I. 1992/3004, S.I. 2002/2174 및 S.I. 2005/735에 의거 개정됨. 이는 다른 개정 지침으로서 본 규정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다.

^(b) S.I. 2001/2127.

- (4) 제4부는 공사 현장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5) 규정 제9조 (1)항 (b)호, 제13조 (7)항, 제22조 (1)항 (c)호, 그리고 부칙 2는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 내 개인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제2부 공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일반 관리 의무

적격성

4.

- (1) 본 규정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은 다음의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 (a) CDM 조정자, 설계자, 원 하청업자 혹은 하청업자로 임명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적격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개인을 CDM 조정자, 설계자, 원 하청업자 혹은 하청업자로 임명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 (b) 적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임명이나 고용을 수락하는 행위
 - (c) 작업자가 다음의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 혹은 공사 작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도록 당해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i) 적격성을 갖추었다.
 - (ii) 적격한 개인의 감독 하에 있다.
- (2) 본 규정에서 적격한 개인이라 칭하는 모든 사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 부과된 다음의 업무에 적격성을 갖추었다는 범위에 한정된다.
 - (a) 모든 요건을 수행한다.
 - (b) 모든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협력

5.

- (1) 단락 (2)를 비롯하여 본 규정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개인은 다음을 이행한다.
 - (a)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 동일한 현장이나 인근 현장에서 공사 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다른 모든 개인과 협력을 추구한다.
 - (b) 다른 개인이 본 규정에 의거하는 의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해 동일한 현장이나 인근 현장에서 공사 작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다른 모든 개인과 협력한다.
- (2) 다른 개인의 통제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되는 모든 사

안을 당해 개인에게 보고한다.

조정

6. 본 규정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개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서로 조정한다.
 - (a) 공사 작업을 수행한다.
 - (b) 공사 작업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 예방 원칙

7.
 - (1) 프로젝트의 설계, 기획 및 준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모든 개인은 당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당해 의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인 예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 (2) 프로젝트의 공사 단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모든 개인은 당해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합리적인 실행 범위에 한해 일반적인 예방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위촉

8.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 명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당해 클라이언트가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유일한 클라이언트(들)로 취급되도록 서면 위촉되는 경우 당해 위촉에 서면 동의한 다른 클라이언트는 당해 위촉 이후에는 본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의무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와 관련된 범위에 한해 규정 제5조 (1)항 (b)호, 제10조 (1)항, 제15조 및 제17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거하여 클라이언트가 보유하는 모든 의무에 종속되며 그에 동의한다.

프로젝트 관리 협약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9.
 - (1) 모든 클라이언트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에 의한 당해 프로젝트 관리 협약이 다음을 보장하기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어떠한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

- (b)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부칙 2의 요건을 준수
 - (c)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물을 설계할 때 당해 구조물의 설계와 사용 자재에 관한 작업장(보건, 안전 및 복지) 규정 1992의 조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2) 클라이언트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단락 (1)에 명시된 협약을 유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정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0.

- (1) 모든 클라이언트는 다음 대상에 대해 단락 (2)에 의거하여 사전공사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 (a) 구조물을 설계하는 모든 개인
 - (b) 당해 클라이언트가 임명했거나 임명할 수 있는 모든 하청업자
- (2) 사전공사 정보는 다음을 비롯하여 클라이언트가 보유한(혹은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로 구성된다.
 - (a) 현장이나 공사 작업에 관련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
 - (b) 작업장으로 용도가 제안된 구조물에 관한 모든 정보
 - (c) 공사 작업의 기획 및 준비를 위해 클라이언트가 임명한 하청업자에 허용되는 공사 단계 이전의 최소한의 기한
 - (d) 기존의 보건 및 안전 파일에 수록된 모든 정보상기의 모든 정보는 단락 (3)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클라이언트가 당해 정보를 제공한 개인과 관련된다.
- (3) 단락 (2)에 명시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
 - (i) 공사 작업에 종사
 - (ii) 공사 수행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iii) 당해 구조물을 작업장으로 사용
 - (b) (a)호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 본 규정에 의거 정보가 제공되는 개인에 조력
 - (i)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
 - (ii)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할당되는 규정 제9조 (1)항에 명시된 자원의 결정

설계자의 의무

11.

- (1) 어떠한 설계자도 프로젝트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인지한 이후에 비로소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을 개시한다.
- (2) 단락 (3)과 (4)에 명시된 의무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다른 관련 설계 고려사항을 온당히 고려하여 이행한다.
- (3) 모든 설계자는 영국 내에서의 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설계를 작성 혹은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한다.
 - (a) 공사 작업을 이행
 - (b) 당해 공사 작업의 영향을 받기 쉬움
 - (c) 구조물 내부나 표면에서 창문이나 혹은 모든 투명/불투명 벽, 천장 혹은 지붕을 청소
 - (d) 구조물의 영구적인 집기 및 비품의 유지보수
 - (e) 작업장으로 고안된 구조물 사용
- (4) 단락 (3)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 (a)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제거
 - (b) 모든 잔여 유해 요소에서 위험을 줄인다.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또한 개별 조치보다는 집단적 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 (5) 작업장 용도의 구조물을 설계할 때, 설계자는 구조물의 설계 및 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작업장(보건, 안전 및 복지) 규정 1992의 조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6) 설계자는 다음 개인이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는데 적절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계나 공사 혹은 유지보수의 측면에 대해 충분한 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클라이언트
 - (b) 기타 설계자
 - (c) 하청업자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작성되거나 변경되는 설계

12. 공사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설계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본 규정이 다음이 적용된다.

- (a) 당해 설계를 위임하는 개인, 단, 당해 개인이 영국 내에서 설립된 경우에 한함
- (b) 당해 개인이 영국 내에서 설립된 경우가 아닌 경우, 당해 프로젝트의 모든 클라이언트

이 경우, 규정 제11조를 준수해야 한다.

하청업자의 의무

13.

- (1) 어떠한 하청업자든 프로젝트의 모든 클라이언트가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인지한 이후에 비로소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 작업을 이행한다.
- (2) 모든 하청업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작업을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 (3) 모든 하청업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신이 임명하거나 고용한 모든 하청업자에게 공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 및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지해야 한다.
- (4) 모든 하청업자는 다음을 비롯하여,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특정 작업을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훈련을 자신의 통제 하에서 공사 작업을 이행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제공한다.
 - (a) 원 하청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현장 유도
 - (b) 다음과 같이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험 관련 정보
 - (i) 작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 1999 제3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위험 평가에 의해 식별된 경우
 - (ii) 자신의 사업을 다른 하청업자가 수행하여 발생하거나 혹은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 (c) 해당 법조항에 의거 자신에게 부과되는 요건과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로서 수행한 위험 평가 결과, 하청업자가 확인한 조치내용
 - (d) 모든 현장 규칙
 - (e) 당해 작업자에 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
 - (f) 당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정된 개인의 신원
- (5) 단락 (4)를 침해하지 않고, 모든 하청업자는 자신의 모든 종업원과 관련하여 작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관리 규정 1999 제13조 (2)항 (b)호에 의거하는 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당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보건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 (6) 어떠한 하청업자도 공사 현장에 비인가 개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당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 (7) 모든 하청업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자신의 통제 하에서 작업하는 모든 개인과 관련하여 공사 단계 전반에 걸쳐 부칙 2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3부 프로젝트 신고시 추가되는 의무

프로젝트 신고시 클라이언트의 위촉

14.

- (1)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공사 작업을 위한 초기 설계 작업이나 준비가 시작된 이후 실행 가능한 즉시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이하 “CDM 조정자”라 함)을 임명한다.
- (2) 단락 (1)에 의거 CDM 조정자를 임명한 후, 클라이언트는 적합한 개인을 선별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이후 실행 가능한 즉시 규정 제22조~제24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이하 “원 하청업자”라 함)을 임명한다.
- (3) 클라이언트는 공사 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CDM 조정자와 원 하청업자가 존재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락 (1)과 (2)에 의거하는 임명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 (4) 클라이언트는
 - (a) 단락 (1)과 (2), 그리고 규정 제18조 (1)항과 제19조 (1)항 (a)호를 제외하고 CDM 조정자 혹은 원 하청업자(자신을 포함하여) 중 어느 누구도 임명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개인들 중 하나 혹은 둘 다로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 (b) 그에 따라, 규정 제20조와 제21조에 의거 CDM 조정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혹은 해당되는 경우 규정 제22조~제24조에 의거 원 하청업자에 부과되는 의무, 혹은 이 두 가지 의무 모두에 종속된다.
- (5) 본 규정에서 임명(위촉)이라 칭하는 모든 언급은 서면 임명을 말한다.

프로젝트 신고시 정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5.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CDM 조정자에 즉시 다음으로 구성된 사전공사 정보를 제공한다.
- (a) 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제10조 (2)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
 - (b) 원 하청업자에게 공사 작업의 기획 및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공사 단계 이전의 최소한의 기한을 비롯하여 규정 제10조 (3)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CDM 조정자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가 보유한(혹은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정 제10조 (2)항에 명시된 모든 추가 정보

프로젝트 신고시 공사 단계의 시작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16.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다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 단계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 (a) 원 하청업자가 규정 제23조 (1)항 (a)호와 제23조 (2)항을 준수하는 공사 단계 계획을 작성한 경우
 - (b) 원 하청업자가 공사 단계 동안 규정 제22조 (1)항 (c)호의 요건(복지 시설의 제공)을 준수할 것으로 만족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보건 및 안전 파일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의무

- 17.
- (1) 클라이언트는 석면 관리 규정 2006^(a) 제4조 (9)항 (c)호에 명시된 정보를 비롯하여 보건 및 안전 파일에 수록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혹은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모든 보건 및 안전 정보를 CDM 조정자에 제공해야 한다.
 - (2) 하나의 보건 및 안전 파일이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 현장 혹은 구조물과 관련되거나 혹은 당해 파일에 다른 관련 정보가 수록된 경우 클라이언트는 각 현장이나 구조물과 관련된 정보가 쉽게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 (3) 클라이언트는 공사 단계 이후 보건 및 안전 파일에 수록된 정보가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당해 법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검사시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 (b) 모든 관련된 신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마다 수정한다.
 - (4) 구조물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처분한 클라이언트가 당해 구조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확보한 개인에게 보건 및 안전 파일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클라이언트는 단락 (3)(a)를 충분히 준수하는 것이며 당해 파일의 성격과 목적을 인지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설계자의 추가적 의무

- 18.
- (1)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 어떠한 설계자도 CDM 조정자를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a) S.I. 2006/2739

임명하기 전까지는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초기 설계 작업 제외)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 (2) 설계자는 CDM 조정자가 보건 및 안전 파일과 관련된 의무를 비롯하여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충분히 조력하기 위해 구조물 설계나 그 공사 혹은 유지보수 측면에 관한 충분한 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하청업자의 추가적 의무

19.

- (1) 프로젝트를 신고하는 경우 어떠한 하청업자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사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a) CDM 조정자와 원 하청업자의 이름을 제공받았다.
 - (b) 당해 작업에 대한 충분한 상세 내용이 수록된, 자신이 이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단계 계획서의 당해 부분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 받았다.
 - (c) 규정 제21조에 의거 프로젝트 신고서가 행정부에 제출되었거나, 혹은 해당되는 경우 철도규제부에 제출되었다.
- (2) 모든 하청업자는
 - (a)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자신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위험 평가서의 해당되는 일부 내용 포함)를 원 하청업자에 즉시 제공한다.
 - (i) 공사 작업을 이행하는 개인이나 그러한 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ii) 공사 단계 정보의 검토 근거가 되는 정보
 - (iii) 규정 제22조 (1)항 (j)호에 따라 보건 및 안전 파일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정보
 - (b)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신이 임명하거나 고용한 모든 하청업자를 원 하청업자에 즉시 알린다.
 - (c) 다음을 준수한다.
 - (i) 규정 제22조 (1)항 (e)호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부과되는 원 하청업자의 모든 지침
 - (ii) 모든 현장 규칙
 - (d) 부상, 질병 및 위험 발생에 대한 보고 규정 1995^(a)에 의거하여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청업자에 요구되는 모든 사망, 부상, 조건 혹은 위험 발생과 관련된 정보를 원 하청업자에 즉시 제공한다.

^(a) S.I. 1995/3163. 이는 본 규정과 상관없는 개정안이다.

- (3) 모든 하청업자는
 - (a) 규정 제13조 (2)항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 단계 계획에 따라 공사 작업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b) 특별한 상황에서 당해 공사 단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c) 공사 단계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모든 발견 내용을 원 하청업자에 통지한다.

CDM 조정자의 일반적 의무

20.

- (1) CDM 조정자는
 - (a) 프로젝트 기간 동안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언과 조력(특히 클라이언트가 규정 제9조 및 제16조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 포함)을 클라이언트에 제공한다.
 - (b) 다음을 촉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사 단계에 대한 기획 및 준비 기간에 보건 및 안전 조치의 조정에 대해 적절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 (i) 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개인들 간 협력과 조정
 - (ii) 규정 제7조에 따른 일반적 예방 원칙의 적용
 - (c) 다음과 관련하여 원 하청업자와 연락을 유지한다.
 - (i) 보건 및 안전 파일의 내용
 - (ii) 원 하청업자가 공사 단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iii) 공사 작업의 기획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설계 전개사항
- (2) 단락 (1)을 침해하지 않고 CDM 조정자는
 - (a) 사전공사 정보를 확인 및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b) 다음 개인 각각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전공사 정보를 다음 개인에게 편리한 형식으로 즉시 제공한다.
 - (i) 구조물을 설계하는 모든 개인
 - (ii) 클라이언트가 임명했거나 혹은 임명할 수 있는 모든 하청업자(원 하청업자 포함)
 - (c) 설계자가 규정 제11조 및 제18조 (2)항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d) 모든 설계 혹은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단계 동안 설계자와 원 하청업자 사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e) 규정 제17조 (1)항, 제18조 (2)항 및 제22조 (1)항 (j)호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후추 공사 작업시 필요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련 정보가 수록된 기록(“보건 및 안전 파일”)을 (전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작성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검토 및 업데이트한다.

(f) 공사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당해 보건 및 안전 파일을 클라이언트에 넘긴다.

CDM 조정자의 프로젝트 신고

21.

- (1) CDM 조정자는 임명된 이후 실행 가능한 즉시 부칙 1에 명시된 상세 내용 등 열람 가능한 부분을 수록한 신고서를 행정부에 제출한다.
- (2) 원 하청업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칙 1에 명시된 모든 상세내용이 단락 (1)에 의거 신고되지 않은 경우, 당해 상세내용에 대한 신고서는 당해 원 하청업자의 임명 후 실행 가능한 즉시, 그리고 공사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에 제출한다.
- (3) 단락 (1) 혹은 (2)에 의거하는 신고서에는 클라이언트의 서명이나 그를 대리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혹은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클라이언트가 이 신고서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4) 프로젝트에 철도규제부가 안전(철로 및 기타 규제되는 교통 시스템에 대한 권한 시행) 규정 2006^(a)의 제3조 (1)항에 의거하는 권한 시행을 이행하는 것에 관해 설명된 공사 작업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 단락 (1)과 (2)는 행정부에 대한 언급을 철도규제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하여 발효된다.

원 하청업자의 의무

22.

- (1) 프로젝트의 원 하청업자는
 - (a) 다음을 촉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공사 작업을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 한다.
 - (i) 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들 간 협력과 조정
 - (ii)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반적 예방 원칙의 적용
 - (b) 설계 혹은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공사 단계 동안 규정 제20조 (2)항 (d)호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CDM 조정자와 연락을 유지한다.
 - (c) 부칙 2의 요건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복지시설이 공사 단계에 걸쳐 제공되도록

^(a) S.I. 2006/557. 이는 본 규정과 상관없는 개정안이다.

한다.

- (d)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현장과 그 현장에서의 활동에 적절한 규칙(본 규정에서는 이를 “현장 규칙”이라 부른다)을 수립한다.
 - (e) 원 하청업자가 본 규정에 의거하는 자신의 의무를 준수할 때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하청업자에 합리적인 지침을 내린다.
 - (f) 공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 및 준비를 위해 허용되는 최소한의 기한을 모든 하청업자에 고지한다.
 - (g) 필요한 경우, 하청업자가 이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단계 계획서 일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당해 하청업자와 협의한다.
 - (h) 모든 하청업자가 공사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해 하청업자가 이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 단계 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 (i) 모든 하청업자가 공사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당해 하청업자에 제공한다.
 - (i) 규정 제13조 (7)항에 의거하는 의무를 시의 적절하게 준수
 - (ii)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
 - (j) 규정 제20조 (2)항 (e)호에 따라 보건 및 안전 파일에 수록하도록 CDM 조정자에 요구될 수 있는 하청업자 활동 관련 정보를 각 하청업자에 확인시키고, 당해 정보를 CDM 조정자에 즉시 제공한다.
 - (k) 규정 제21조에 의거 제출하는 신고서에 수록하도록 요구되는 상세내용을 공사 작업과 관련된 작업자가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읽기 쉬운 상태로 게시한다.
 - (l) 비인가 개인이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2) 원 하청업자는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에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a) 적절한 현장 유도
 - (b) 규정 제13조 (4)항에 의거 의무가 부과되는 하청업자가 이행하는, 동 규정에 명시된 정보 및 훈련
 - (c) 건강 혹은 안전을 부당하게 위협하지 않고 특별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모든 정보와 훈련

공사 단계 계획과 관련하여 원 하청업자의 의무

23.

- (1) 원 하청업자는

- (a) 공사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건강 혹은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정 제11조 (6)항 및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설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제20조 (2)항 (b)호에 의거 제공되는 사전공사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당해 공사 단계를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한 공사 단계 계획을 작성한다.
 - (b) 때에 따라, 그리고 프로젝트 업데이트 전반에 걸쳐 적절한 경우에 따라, 건강 혹은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 단계를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에 지속적으로 충분하도록 공사 단계 계획을 검토, 수정 및 업그레이드한다.
 - (c)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과 당해 공사 작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 단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2) 원 하청업자는 공사 단계 계획서에 공사 작업에 기인하는 건강 및 안전 위험(특별한 공사 작업 종류에 특정적인 위험 포함)을 식별하고 현장 규칙을 비롯하여 당해 위험을 해결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를 수록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작업자들과의 협력 및 협의와 관련하여 원 하청업자의 의무

24. 원 하청업자는

- (a) 자신과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이 당해 작업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및 개발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점검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한다.
- (b) 당해 작업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자신들의 종업원에 의해 당해 사안이 협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적절한 시점에 당해 작업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과 협의한다.
- (c) 당해 작업자들이나 그들의 대리인이 다음의 정보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와 관련하여 혹은 현장에서 그들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 하청업자가 보유하거나 혹은 본 규정에 의거 원 하청업자에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하고 그 사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i)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 공개
 - (ii) 제정법에 의거 부과되는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
 - (iii) 어떤 개인이 공개에 동의하기 전까지에 한해, 어떤 개인에게 특정적으로 관련된 정보

- (iv) 작업시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사유로 자신의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거나 혹은 일부 다른 개인에 의해 당해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한 타인의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공개
- (v) 소송 절차를 제기, 기소 혹은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이 확보한 정보

제4부 공사 현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 관련 의무

규정 제26조~제44조의 적용

25.

- (1)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하청업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신의 통제 하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통제 하의 사안과 관련된 범위에 한해 규정 제26조~제44조의 요건을 준수한다.
- (2) 작업시 개인에 의해 공사 작업이 이행되는 방식을 통제하는 모든 개인(공사 작업을 이행하는 하청업자는 제외)은 자신의 통제 하의 사안과 관련된 범위에 한해 규정 제26조~제44조의 요건을 준수한다.
- (3) 다른 개인의 통제 하에서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는 모든 결함을 당해 개인에게 보고한다.
- (4) 단락 (1)과 (2)는 규정 제33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규정은 그에 명시된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에 관한 명백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작업 장소

26.

- (1)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근과 출입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시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모든 작업 장소와 모든 기타 장소에 대한 접근과 출입이 충분히 안전하고 적합해야 한다.
- (2) 모든 작업 장소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당해 장소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성하여 유지한다.
- (3)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어떠한 개인도 단락 (1)이나 (2)의 각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장소에 대해서든 접근하거나 출입하거나 혹은 그러한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4) 모든 작업 장소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모든 필요한 작업 장비 구색을 고려하여 작업 중이거나 혹은 당해 장소에서 작업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배치한다.

양호한 상태 및 현장 안전

27.

- (1) 공사 현장의 모든 부분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작업 장소로 사용되는 공사 현장의 모든 부분은 합리적인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 (2)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현장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그리고 제기된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와 같이 조치한다.
 - (a) 주변을 적절한 표식으로 식별하여 배치함으로써 그 범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b) 울타리를 친다.
- (3) 못(혹은 이와 유사한 날카로운 물체)이 돌출된 목재나 기타 자재는
 - (a) 어떠한 작업에서든 사용해서는 안 된다.
 - (b) 어떠한 장소에든 보관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단, 못(혹은 이와 유사한 날카로운 물체)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인 경우 그러하다.

구조물의 안정성

28.

- (1) 개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사 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강도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는 신규 혹은 기존의 구조물이나 그 일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 (2) 모든 부벽, 임시 지지물 혹은 임시 구조물은 가해질 수 있는 예측 가능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해야 하며, 당해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 (3)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하중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철거 혹은 해체

29.

- (1) 구조물이나 그 일부의 철거나 해체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 수행하고, 위험 예방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 낮은 수준까

지 위험을 최소화한다.

(2) 철거나 해체 수행 협약서는 당해 철거나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작성한다.

폭약

30.

- (1)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폭약을 안전하게 보관, 수송 및 사용한다.
- (2) 단락 (1)을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개인도 폭발이나 그로 인해 사출되거나 날아오는 물체로 인한 부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폭약을 장전하거나 발사한다.

굴착

31.

- (1)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지지물이나 공성물(battering)의 제공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 (a) 굴착 구멍이나 그 일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 (b) 굴착 구멍의 측면이나 지붕 혹은 그에 인접한 곳에 있는 어떠한 자재도 제거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한다.
 - (c) 제거되거나 추락한 자재로 인해 굴착 구멍에 개인이 매장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다.
- (2) 개인, 작업 장비 혹은 어떠한 자재 축재라도 굴착 구멍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3) 단락 (1)과 (2)를 침해하지 않고 굴착 구멍의 일부나 그에 인접한 지면이 작업 장비나 자재로 인해 과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4)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단락 (1)에 따라 지지물이나 공성물이 설치된 굴착 구멍에서 어떠한 공사 작업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
 - (a)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구멍과 작업 장비 및 자재에 대해 다음의 시점에 해당 개인이 검사를 실시했다.
 - (i) 작업 이행을 위한 작업조를 교대하는 시점
 - (ii) 굴착 구멍의 강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 (iii) 어떠한 자재든 우발적으로 추락하거나 제거된 후
 - (b) 당해 검사를 실시한 개인은 해당 장소에서 당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데 만족스럽게 동의한다.

- (5) 검사를 실시한 개인이 규정 제33조 (1)항 (a)호에 따라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검사 대행을 위탁한 개인에 고지하는 경우, 당해 사안이 만족스럽게 시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굴착 구멍에서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방죽과 잠함

32.

- (1) 모든 방죽이나 잠함은
 - (a) 설계와 시공이 적절해야 한다.
 - (b) 적절하게 장착되어 물이나 자재가 들어오는 경우 대피소나 비상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c) 유지보수가 적절하다.
- (2) 방죽이나 잠함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공사 작업을 이행할 때 사용한다.
 - (a) 방죽이나 잠함,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 장비와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점에 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했다.
 - (i) 작업 이행을 위해 작업조를 교대하는 시점
 - (ii) 방죽이나 잠함의 강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 (b) 당해 검사를 실시한 개인이 규정 제33조 (1)항 (a)호에 따라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검사 대행을 위탁한 개인에 고지하는 경우, 당해 사안이 만족스럽게 시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방죽이나 잠함에서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검사 보고서

33.

- (1) 단락 (5)에 따라 규정 제31조나 제32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개인은 다음의 경우 교대조 근무가 종료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 (a) 공사 작업을 검사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모든 사안에 대해 검사 대행을 위탁한 개인에 고지하고
 - (b) 부칙 3에 명시된 상세내용을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단락 (1)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인은 보고서와 관련된 검사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당해 보고서나 그 사본을 검사 대행을 위탁한 개인에 제출한다.
- (3) 단락 (1)이나 (2)에 의거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이 종업원이거나 혹은 타인의

통제 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고용주나 혹은 경우에 따라 당해 작업을 통제하는 개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을 보장한다.

(4) 검사 대행을 위탁한 개인은

(a) 작업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 1974^(a)의 제19절에 의거하여 임명된 검사관이 검사를 위해 열람한 보고서나 그 사본을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i) 당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사를 실시한 작업 장소에

(ii) 검사 후 3개월 동안

또한 당해 검사관이 때때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서나 그 사본에서 인용한 내용을 당해 검사관에 전달한다.

(5)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규정 제31조 (4)항 (a)호 (i)목과 제32조 (2)항 (a)호 (i)목의 목적을 위해 작업 장소에서 이행된 검사와 관련하여 7일의 기간 이내에 하나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배전 설비

34.

(1)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전 설비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점검하며 명확히 표시한다.

(2) 전력 케이블에 기인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a) 당해 케이블을 위험 지역으로 향하지 않게 한다.

(b)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필요시에는 접지한다.

(c) 단락 (a)나 (b)를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경고 통지를 하고 또한 다음을 설치하거나 (조치의 경우) 취한다.

(i) 불필요한 작업 장비를 배제하는데 적합한 장애물을 설치한다.

(ii) 차량이 케이블 아래로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용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iii) 어느 경우에도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3) 지하 서비스에 기인하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혹은 지하 서비스의 손상이나 방해에 기인하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공사 작업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의사 방지

^(a) 1974 c.37

35.

- (1)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개인이든 물이나 다른 액체에 추락하여 익사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당해 개인이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 (b) 추락한 경우 익사 위험을 최소화한다.
 - (c) 적절한 구출 장비를 설치, 유지 및 필요시에는 사용하여 당해 개인이 추락한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 (2) 수로를 통해 작업 장소로 개인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3) 수로를 통해 작업 장소로 개인을 수송할 때 사용하는 모든 선박은 탑승 인원을 초과하거나 적정 탑재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통 통행로

36.

- (1) 모든 공사 현장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건강이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통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 (2) 교통 통행로는 수량이나 적절한 위치 및 크기 면에서 충분하게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차량에 적합해야 한다.
- (3) 교통 통행로는 다음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아니면 하위단락 (2)에 부합되지 않는다.
 - (a) 보행자 혹은 차량이 그 인근의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b) 교통 통행로 상에서 이어진 보행자용 문이나 대문이 당해 교통 통행로와 충분히 분리되어 보행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모든 접근하는 차량이나 식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c) 차량과 보행자용 통행로를 충분히 분리하여 안전을 보장하며, 이러한 안전 보장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i)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
 - (ii) 접근하는 차량에 부딪히거나 치이기 쉬운 개인에게 경고하는 효과적인 표지판을 설치한다.
 - (d) 보행자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적재 구획에는 최소 하나의 출구를 설치한다.
 - (e) 보행자가 주로 차량 통행용으로 만들어진 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행자용으로 하나 이상의 문을 당해 문의 바로 옆에 설치하고 명확히 표시하여 방해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4) 모든 교통 통행로는
 - (a) 건강이나 안전 사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표시를 하여 구분한다.
 - (b)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c) 적절하게 유지보수한다.
- (5)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교통 통행로에 어떠한 방해도 없고 충분한 여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차량도 당해 교통 통행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차량

37.

- (1) 모든 차량의 의도치 않은 이동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2) 차량 이동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당해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개인이 차량 이동에 기인하여 위협에 처해지기 쉬운 개인에게 경고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3) 공사 작업 목적을 위해 사용 중인 모든 차량을 운전, 작동 혹은 견인할 때에는
 - (a) 처한 상황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 작동 혹은 견인한다.
 - (b) 안전하게 운전, 작동 혹은 견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재한다.
- (4) 어떠한 개인도 공사 작업 목적을 위해 제공된 안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공사 작업 목적을 위해 사용 중인 차량에 탑승이 요구되거나 허용되거나 하지 않는다.
- (5) 어떠한 개인도 안전한 작업 장소가 당해 개인에 대해 제공되어 유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느슨한 자재의 적재나 하역시 어떠한 차량에든 탑승한 채로 있거나 혹은 그렇게 남겨져 있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 (6) 어떠한 차량이든 굴착 구멍이나 구덩이, 혹은 물에 추락하거나, 혹은 독이나 방벽의 가장자리를 넘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화재 등에 기인하는 위험 예방

- 38.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음에 기인하여 어떠한 개인에게든 발생하는 부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a) 화재나 폭발
 - (b) 홍수
 - (c) 질식을 야기하기 쉬운 물질

비상시 절차

39.

- (1) 공사 현장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당해 현장이나 그 일부에서 필요한 모든 대피 절차가 포함된다.
- (2) 단락 (1)에 의거하는 조치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a) 공사 현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의 종류
 - (b) 공사 현장의 특징과 크기, 그리고 당해 현장에서의 작업 장소의 수와 위치
 - (c) 사용하는 작업 장비
 - (d) 언제라도 동시에 당해 현장에 주재할 수 있는 개인의 수
 - (e) 현장에 있거나 혹은 현장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이나 자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 (3) 단락 (1)에 따라 조치를 수립한 경우 다음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a)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모든 개인이 당해 조치를 잘 파악하고 있다.
 - (b) 적절한 간격을 두고 당해 조치를 시험하여 발효한다.

비상시 경로 및 비상구

40.

- (1) 공사 현장에 있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 발생시 모든 개인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적절한 비상시 경로와 비상구를 설치한다.
- (2) 단락 (1)에 따라 설치된 비상시 경로와 비상구는 안전한 지역으로 확인된 구역에 가능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3) 단락 (1)에 따라 조성된 모든 비상시 경로와 비상구, 그리고 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 통행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비상 조명을 설치하여 당해 비상시 경로나 비상구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 단락 (1)에 의거하여 설비하는 경우 규정 제39조 (2)항에 명시된 사안을 고려한다.
- (5) 모든 비상시 경로나 비상구에는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 탐지 및 소방

41.

- (1)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적절하고 충분히 구비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 (a) 소방 장비

- (b) 화재 탐지 및 경보 시스템
- (2) 단락 (1)에 의거하여 설비하는 경우 규정 제39조 (2)항에 명시된 사안을 고려한다.
- (3) 단락 (1)에 의거 구비되는 모든 소방 장비와 화재 탐지 및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절한 간격을 두고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적절하게 유지 보수한다.
- (4) 자동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은 모든 소방 장비에 대해서는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5)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개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소방 장비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 (6) 작업 활동으로 인해 특별한 화재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개인은 적절하게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 (7) 소방 장비에는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선한 공기

42.

- (1)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모든 작업 장소나 그에 대한 접근로에는 신선한 공기나 정화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하여 당해 장소나 접근로가 안전하고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2) 단락 (1)의 준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치에는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기기를 설치하여 당해 장치의 고장을 시각적으로나 혹은 청각적으로 경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도 및 악천후 보호

43.

- (1)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작업 시간 동안 실내 작업 장소의 온도를 당해 장소의 용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 (2) 실외의 모든 작업 장소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그리고 당해 장소의 용도를 고려하여 당해 장소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장소에서 작업하는 개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방호복이나 작업 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 악천후로부터 보호한다.

조명

44.

- (1) 모든 작업 장소와 그 접근로, 그리고 모든 교통 통행로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단,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한해 자연 조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인공 조명의 색상은 건강과 안전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표시나 신호에 대한 인식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변경시키는 색이어서는 안 된다.
- (3) 단락 (1)을 침해하지 않고 주요 인공 조명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차 조명을 설치한다.

제5부 일반

민사책임

45. 제9조 (1)항 (b)호, 제13조 (6)항과 (7)항, 제16조, 제22조 (1)항 (c)호와 (l)호, 제25조 (1)항과 (2)항 및 (4)항, 제26조~제44조 및 부칙 2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제외하고 본 규정의 상기 조항에 의거 부과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해 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의 종업원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행위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화재 관련 법집행

46.

- (1) 단락 (2) 및 (3)에 따라 규정 제39조와 제40조, 그리고 당해 규정이 화재에 관한 것인 경우 규정 제41조와 관련된 작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공사 작업이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을 제외한 개인에 의해 점유되는 영내에 속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 현장과 관련된 법집행 당국이 된다.
 - (a)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규제적 개혁(화재 안전) 명령 2005^(a) 제25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법집행 당국
 - (b)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화재(스코틀랜드)법 2005^(b) 제61절의 의미에 해당하는 법집행 당국
- (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규제적 개혁(화재 안전) 명령 2005가 적용되는 영내와 관련하여 단락 (1)만이 적용된다.
- (3) 스코틀랜드의 경우 화재(스코틀랜드)법 2005 제3부가 적용되는 영내와 관련해서는

^(a) S.I. 2005/1541, 이는 본 규정과는 상관없는 개정안이다. 본 명령에 의거하는 국무 장관의 모든 기능은 웨일즈에서 이행되는 경우에 한해 S.I. 2006/1458에 의거 웨일즈 의회로 이전되었다.

^(b) 2005 asp 5. 제61조 (9)항이 S.I. 2005/2060 제2조 (1)항 및 (4)항 (a)호와 (b)호에 의거 개정되었다.

단락 (1)만이 적용된다.^(c)

경과규정

47.

- (1) 본 규정은 다음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발효되기 전에 개시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 (2) 단락 (3)에 따라, CDM 조정자나 원 하청업자 임명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단락 (1)이나 (2)에 명시된 시점이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경우, 클라이언트는 당해 CDM 조정자나 혹은 경우에 따라 원 하청업자를 실행 가능한 즉시 임명한다.
- (3) 공사(설계 및 관리) 규정 1994^(d)(이하 본 규정에서는 “1994 규정”이라 함)에 의거 이미 단락 (2)에 따라 CDM 조정자 혹은 원 하청업자로 각각 임명된 계획 감독자나 원 하청업자를 클라이언트가 임명하는 경우, 규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당해 클라이언트는 본 규정이 발효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기와 같이 임명된 CDM 조정자나 원 하청업자가 규정 제4조 (2)항의 의미에 해당하는 적격성을 갖추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1994 규정 제6조에 의거 임명된 모든 기획 감독자나 원 하청업자는 클라이언트의 명백한 임명이 없는 경우 단락 (2)의 목적을 위해 각각 CDM 조정자 혹은 원 하청업자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급된다.
- (5) 단락 (4)에 따라 CDM 조정자나 원 하청업자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개인은 본 규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신이 규정 제4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적격함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6)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1994 규정의 제4조에 의거 클라이언트가 임명한 모든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되고 또한 당해 개인 스스로가 동의하는 경우 당해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으로 지속적으로 행위 하며 당해 클라이언트에 대해 본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요건과 금지사항에 종속된다. 단, 당해 임명이 해당 클라이언트에 의해 취소되거나 혹은 당해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혹은 본 규정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 처음에 도래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7) 1994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통지한 경우, 규정 제21조에 의거하는 통지에 대해 제19조 (1)항 (c)호 및 제22조 (1)항 (k)호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에 의거하는 통지로 해석된다.

^(c) 제77조 (1)항은 S.I. 2005/2060 제2조 (1)항 및 (6)항 (a)호와 (b)호에 의거 개정되어 제77조 (1A)항이 삽입되었다. 제77A항은 S.I. 2005/2060 제2조 (1)항과 (7)항에 의거 삽입되었고 제78조 (2)항은 S.S.I. 2005/352 규정 제2조 및 S.I. 2005/2060 제2조 (1)항 및 (8)항 (a)호에 의거 개정되었고, 제78조 (3)항은 S.I. 2005/2060 제2조 (1)항과 (8)항 (b)호와 (c)호에 의거 개정되어 제78조 (5A)항이 삽입되었다.

^(d) S.I. 1994/3140, S.I. 2006/557에 의거 개정됨. 이는 다른 개정 지침으로서,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

폐지 및 개정

48.

- (1) 부칙 4에 열거된 폐지안이 발효된다.
- (2) 부칙 5에 열거된 개정안이 발효된다.

노동연금부 장관의 직권으로 서명.

Bill McKenzie
정무 차관
노동연금부

2007년 2월 7일